

ESCO 등록기준 변경, 전문성 한층 '강화'

ESCO 등록기준 변경안이 입법예고 됐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오는 8월 28일 '에너지효율법'으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체계가 재정비되면서 이번 ESCO 등록기준 변경안도 함께 마련됐다.

지경부는 지난 5월 2일, 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및 열사용기자재규칙 일부 개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글 _ 오혜은 기자(hi9187@hanmail.net)

이번에 마련된 ESCO 등록기준은 기존보다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다.

이는 정부 지원을 받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만의 전문성 확보하기 위한 것.

특히 이번 입법예고안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ESCO 기술구분 변경으로 현재 투자대상지 중심의 구분방식에서 투자설비(열 분야, 전기 분야)를 중심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ESCO 등록기준에서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누고 1종은 전기+열 분야 모두를 다루는 한편 2종은 열 분야와 전기 분야를 나눠 ESCO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문기술 ESCO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표 1>기술구분 변경

구분	현재		개정(안)		
	1종	2종	1종	2종	
				열	전기
분야	공장생산설비	건물		열분야	전기분야

위 표와 같이 기존에 1종 공장생산설비, 2종 건물에서 개정안에는 1종은 열·전기 분야, 2종 열은 열분야, 2종 전기분야로 구분해 사업을 수행한다.

<표 2>자산변경

구분		현재		개정(안)	
		1종	2종	1종	2종
법인	자본금	2.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4억원 이상



이와 함께 ESCO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사업규모가 대형화 되는 것에 감안해 <표 2>와 같이 ESCO 사업에 대한 에너지사용자측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자산규모를 일부 상향 조정했다.

- 기술인력은 단위사업규모가 대형화·복합화 되는 추세에 맞춰 현재의 기술인력 수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했다.
- 1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건축, 에너지 분야의 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를 2인 이상, 2종은 열, 전기 분야 각각 1인 이상 보유해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열관리기사는 1종 2인 이상이며 2종 열 분야는 1인 이상, 전기 분야는 해당 없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는 1종 2인 이상, 2종 열 분야는 해당 없으며 전기 분야에는 2인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건축설비기사, 가스기사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건축분야의 기능사 또는 가스기능사는 각각 1인 이상 보유해야 한다.
- 기술인력 중 기술사는 해당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 기사는 동일분야 산업 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한 동일분야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고, 기능사는 동일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계측장비는 설비별, 구분(열, 전기) 및 ESCO사업 현실에 맞춰 해당 분야별 필수 계측장비만을 구비하고 장비별 SPEC(계측범위 등)을 명시한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계측장비에 대해서는 개정된 계측장비로 인정하고 신규로 추가되거나 기존에 임대장비는 신규 등록 해야 한다.

본 등록기준은 동법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돼 오는 8월에 개정·시행되며 기존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별표 2참조].

[별표 2]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기준(제30조제2항 관련)

구 분	내 용	1종	2종	
			열	전기
장 비	1. 연소가스 분석기 (1) 이산화탄소(CO ₂), 산소(O ₂), 일산화탄소(CO) 및 질소산화물(NO _x) 측정 가능 (2) 온도: 0℃ ~ 1,000℃	1대 이상	1대 이상	해당없음
	2.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1) 온도: -20℃ ~ 500℃ (2) 분해능: 0.1℃	1대 이상	1대 이상	해당없음
	3. 고온용 온도계 -50℃ ~ 1,300℃	1대 이상	1대 이상	해당없음
	4. 적외선 온도계 -30℃ ~ 400℃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5. 초음파 유량계 (1) 유량 및 유속 측정자료 10,000개 이상 저장 가능 (2) 온도: 0℃ ~ 120℃ (3) 파이프 바깥지름: 50mm ~ 2,000mm (4) 유속: 0m/s ~ 10m/s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6. 디지털 풍속계 0m/s ~ 50m/s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7. 디지털 풍압계 (1) 정압, 차압 측정 가능 (2) -1,000Pa ~ 3,000Pa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8. 디지털 압력계 0bar ~ 30bar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9. 데이터 기록계 (1) 기록 용량: 512킬로바이트 이상 (2) 기록 채널: 5채널 이상 (3) 온도측정용 감지기: 5개 이상/대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0. 온도계 (1) 온도: -40℃ ~ 300℃ (2) 분해능: 0.1℃ (3) 침형 및 표면 접촉식 센서 각 1개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11. 온·습도계 (1) 온도: -10℃ ~ 60℃ (2) 상대습도: 0% ~ 100%	1대 이상	1대 이상	1대 이상

구 분	내 용		1종	2종	
				열	전기
장 비	12. 교류전력 측정기 (1) 삼상,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및 역률 측정가능 (2) 전압: 0V ~ 600V (3) 전류: 0A ~ 1,000A		1대 이상	해당없음	1대 이상
	13. 전력 분석계 (1) 단상, 삼상, 단상3선 측정 가능 (2) 전압, 전류, 역률, 고조파 및 전력 적산 가능 - 측정전압: 0V ~ 600V - 측정전류: 0A ~ 3,000A (3) 측정 데이터 기록 가능		1대 이상	해당없음	1대 이상
	14. 조도계 0lx ~ 20,000lx		1대 이상	해당없음	1대 이상
	15. 회전계 (1) 접촉 및 비접촉 측정 가능 (2) 접촉: 1rpm ~ 15,000rpm (3) 비접촉: 1rpm ~ 90,000rpm		1대 이상	해당없음	1대 이상
장 비	법인	법인 자본금(주식회사외의 법인은 출자금)	5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억원 이상
	개인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4억원 이상	4억원 이상
기술인력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건축, 에너지 분야의 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2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열관리기사		2인 이상	2인 이상	해당없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2인 이상	해당없음	2인 이상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공조냉동기계기사, 화공기사, 건축설비기사, 가스기사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건축분야의 기능사 또는 가스기능사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비고〉

1. 1종은 열·전기분야, 2종 열은 열분야, 2종 전기는 전기분야로 구분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2. 기술인력 중 기술사는 해당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 기사는 동일분야 산업 기사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한 동일분야 에너지진단사로 대체할 수 있고, 기능사는 동일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3.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